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1981. 3. 16 대통령령 제 10254 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②법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이라 함은 인쇄기·공판기·복사기 또는 등사기등 기계로 만들어진 것에 의하여 혼인식 회갑연 등에 하객을 초청하거나 이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식물"이라 함은 장식용 테프, 꽃가루, 락총, 꽃수술 조각품 등을 말한다.
 ④법 제 4 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주류"라 함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음식물"이라 함은 다과류나 청량음료 이외의 음식물을 말한다.

제 4 조 (허가허식이 아닌 행위의 범위) 법 제 4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전이나 묘소에 10개이내, 예식장에 2개 이내의 화환이나 화분 또는 꽃바구니를 진열하는 행위.
2. 상례에 있어서 상가의 일을 돋는 자나 배장지 또는 화장지까지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3. 혼례에 있어서 당사자와 그 부모 및 주례가 꽃을 패용하는 행위.
4. 혼례에 있어서 가정에서 당사자의 친족에 대하여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5. 회갑연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대중 음식점(숙박업법에 의한 호텔영업의 영업장소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영업하는 대중음식점을 제외한다) 또는 가정에서 간소한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제 5 조 (허가허식 행위금지의 적용제외) 법 제 4 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장, 국민장, 사회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서울특별시·부산시나 도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의 경우와 국가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상례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한다.

제 6 조 (허가신청) ① 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식장등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명칭·설립년월일과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②제 1 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의 구조도 및 그 설명서
3. 결혼상담요원의 이력서 (결혼상담소의 경우에 한한다)
4. 염습을 하는 자의 이력서 (장례식장 및 장의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 7 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식장등의 영업허가를 받은자 (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영업시설의 구조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변경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례식장 등 영업의 종류) 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혼예식장영업 :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혼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장례식장영업 :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장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장의사영업 :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결혼상담영업 : 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